

● 지방공기업경영평가규정

제 정 1995. 3. 29 내무부 훈령 제1136호
전문개정 1999. 6. 5. 행정자치부훈령 제 28호
전문개정 2002. 8. 6. 행정자치부훈령 제 87호

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지방공기업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78조 및 동법시행령(이하 “령”이라 한다) 제6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적용범위) 이 규정의 적용대상은 법 제5조·제49조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·경영하는 지방직영기업과 지방공사·공단(이하 “지방공기업”이라 한다)으로 한다.

제3조 (경영평가대상기관의 선정) ①영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기업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(이하 “장관”이라 한다)이 지방공기업경영평가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 매년 경영평가 대상기관을 선정한다.

②영업실적이 없거나 설립된지 6개월 미만인 지방공기업 및 사업준비중인 지방공기업은 경영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다.

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별히 경영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장관에게 경영평가 실시를 요청하는 때에는 경영평가대상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다.

제4조 (경영평가기관의 요건) ①경영평가기관은 매년 장관이 지정하며, 영 제68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영평가기관중 제2호 및 제3호에서 경영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는 다음의 요건을 갖춘 기관이어야 한다.

1. 경영평가전문기관은 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를 정관상 주요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고,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전문인력을 10 인 이상 보유하고 있는 법인
2. 회계법인은 공인회계사 15인이상을 갖추고 있는 회계법인으로서, 최근 3년 이내에 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실적이 있는 법인

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영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경영평가기관을 지정하여 경영평가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4분의 1이상을 출자·출연한 기관이 아니어야 한다.

제5조 (지방공기업경영평가단의 구성)

①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경영평가기관을 지정하여 경영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경영평가기관으로 하여금 지방공기업경영평가단(이하 “평가단”이라 한다)을 구성하여 경영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.

1.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로서 공기업의 경영 및 기타 관련

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

2.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
 3. 지방공기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
 4. 기타 공기업의 경영평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
- ③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단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자에 대한 자격을 심사하여 필요할 경우 경영평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해촉 또는 재위촉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6조 (평가단의 임무) ①경영평가기관의 장은 평가단이 경영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평가의 객관성·타당성·신뢰성이 확보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②평가단은 당해 지방공기업이 제출한 경영실적보고서, 결산보고서,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 및 기타 증빙서류 검토와 현장확인 등을 토대로 성실하게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.

③평가단은 경영평가결과보고서를 성실히 작성하여 경영평가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.

④평가단은 소정의 업무가 완료된 때에는 해체된 것으로 본다.

제7조 (경영평가지침 및 계획) ①장관은 지방공기업에 대한 당해연도 경영평가의 기본방향, 평가대상 및 경영평가기관 등을 명시한 경영평가지침을 작성하여 매년 2월말까지 시·도지사에게 통보한다.

②시·도지사는 제1항의 평가지침에

의거 매년 3월 31일까지 세부 경영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시장·군수·구청장 및 당해 지방공기업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제8조 (경영평가지표의 작성) ①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를 위한 지표는 경영목표의 달성도, 업무의 능률성, 수익성 및 고객서비스 등에 관하여 평가를 실시하되, 당해 지방공기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장관이 작성한다.

②장관은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지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공기업의 대표자에게 매년 3월 31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경영평가기관을 지정하여 경영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당해 경영평가기관으로 하여금 경영평가편람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공기업의 대표자에게 통보하게 할 수 있다.

제9조 (위원회의 구성·운영)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.

②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출석수당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, 간사는 행정자치부 공기업과장이 된다.

제10조 (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설치)

①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방공기업의

경영평가에 관한 사항과 장관이 통보한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따로 정한다.

제11조 (출석·자료제출 및 의견진술)

위원회 및 평가단은 경영평가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방공기업의 임직원 기타 관계인의 출석·의견진술 및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출석·의견진술 및 자료제출 등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제12조 (경영평가등급의 결정) ①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등급(이하 “등급”이라 한다)은 가, 나, 다, 라, 마 등 5개 등급으로 한다. 이 경우 경영평가를 받지 아니한 지방공기업은 마등급을 부여한다.

②등급의 결정은 절대평가방법에 의하되, 필요한 경우에 상대평가방법을 혼용할 수 있다.

③등급의 결정은 장관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11월말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확정·통보한다.

④기타 등급부여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장관이 경영평가지침으로 정한다.

제13조 (경영평가의 결과조치)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공기업 대표자는 경영평가결과 시정을 요하거나 개선·보완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

에 대하여는 제도개선, 예산의 우선지원 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제14조 (인사조치) ①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경영평가결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공기업 대표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, 요구받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공기업 대표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1. 우수 직영기업의 관리자 또는 그 종사자에 대한 포상 또는 상급기관 발탁·희망부서 전보 및 우선승진 등 인사상 특전부여
 2. 우수 공사·공단 종사자에 대한 포상·우선승진·승급 등 인사상 특전부여
 3. 직영기업의 종사자 또는 공사·공단의 임·직원에 대한 징계처분 등
- ②제1항 각호에서 규정한 인사상 특전부여와 징계처분 등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공기업의 대표자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.

제15조 (기관성과급) 지방공기업 대표자는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평가등급에 따라 기관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. 이 경우 기관성과급의 지급 및 지급시기 등은 법 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장관이 작성·통보한 지방공기업예산편성지침에 의하여 정하여야 한다.

제16조 (비용부담) ①경영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해 지방공기업이 부담하

되, 그 비용의 기준은 장관이 정한다.

②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경영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17조 (기 타)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장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